

건설교통부, 4대 보험의 보험요율 고시

건 설교통부는 2006년도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4대 보험의 보험요율을 고시, 금년 1월부터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.

4대 보험 중 **고용보험**은 노무비에 각 등급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요율은 1등급 1.17%, 2등급 0.85%, 3등급 0.71%, 4등급 0.69%, 5등급 이하는 0.67%이다.

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따르며 적용대상은 모든 건설공사이다.

그러나 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관급재료)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.

적용기준은 ▲일반(등급)공사는 해당등급 요율을 적용하고 ▲PQ, 실적대상공사는 공사금액에 따라 토목, 건축 등 요율이 적용된다. 또 ▲수의계약 대상공사는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을, 기타공사는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이 각각 적용·시행된다.

산업재해보상보험료 비용은 노무비에 요율 3.4를 곱한 금액이며, 적용대상은 모든 건설공사이다. 그러나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국민연금보험료 비용은 직접노무비에 요율 2.41%를 곱한 금액으로 적용대상은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이다.

국민건강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요율 1.25%를 곱한 액수로 적용대상은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이다.

건설교통부는 앞으로 건설업체들이 보험료를 제대로 확

보하지 못해 하도급업체와 도급계약을 한 이후 비용부담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.

■ 4대 보험료의 적용기준

1. 고용보험요율 : 노무비 × 1.17 ~ 0.67%
(등급별 자동적용)
2. 산재보험요율 : 노무비 × 3.4
3. 국민연금보험요율 : 직접노무비 × 2.41%
4. 국민건강보험요율 : 직접노무비 × 1.25%
5. 적용대상
 - 고용, 산재 : 건설업등록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공사
 - 연금, 건강 :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의 모든 공사
6. 시행일 : 2006.1.1일 이후 건설공사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

■ 2006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

노동부는 지난 2005년 12월 30일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선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에 적용할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고시하였다.

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△일반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28% △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금액의 33%이다.

■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

노동부는 지난 2005년 12월 30일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3항 및 제4항,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고시하였다.

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건설업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1000분율)

사업종류	요율
1. 광업	
2. 제조업	
3. 전기·가스 및 상수도업	10
4. 건설업	34
5. 운수창고 및 통신업	
6. 임업	
7. 어업	185
8. 농업	23
9. 기타의 사업	
10. 금융보험업	5

■ 2006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공사 실적액 고시

노동부는 지난 2005년 12월 29일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」에 의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5,344백만원으로 고시하였다.

■ 2006년도 건설업 월평균 고시

노동부는 지난 2005년 12월 30일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 임금을 2,141,625원으로 고시하였다.

■ 2006년도 고용·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

노동부는 지난 12월 30일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, 사업의 폐업·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·확인하기 곤란한 경우, 임금 관련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(표 참조)과 같이 고시하였다.

[표] 기준임금액

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

산업분류	기준임금액
A. 농업 및 임업	1,145,000
B. 어업	1,163,000
C. 광업	1,599,000
E. 전기, 가스 및 수도사업	1,269,000
F. 건설업	2,141,625
J. 통신업	1,226,000
K. 금융 및 보험업	1,878,000
N.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	790,000
S. 가사, 서비스업	884,000

※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

※ 시간 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을 나눈 금액으로 한다(단 10월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).